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1차 공개토론회

민주화운동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 • •

- 때 : 2000년 7월 3일 (월) 오후 2시
- 곳 : 국회 내 헌정기념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1차 공개토론회

민주화운동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 때 : 2000년 7월 3일 (월) 오후 2시
- 곳 : 국회 내 헌정기념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2동 651-30 한울삶 내 Tel : 02-766-4624 Fax : 02-743-2835

식수

사 회 : 이덕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애국의례

내 빈 소개

인사말

경과보고

- | | |
|-------|--|
| 발 제 1 | 민주화운동의 개념과 범주 (정해구·성공회대 교수) |
| 발 제 2 |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성과 (박세길·전국연합 편집위원장) |
| 토 론 | 민교협 1인,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안하원(부산연대 공동대표), 박 ^을
(민주당 전문위원) |

자료집 순서

- 1 … 식 순
 - 2 … 인사말
 - 4 … 경과보고
 - 7 … 발제 1 - 민주화운동의 개념과 범주
 - 13 … 발제 2 -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성과
 - 14 … 첨부자료 1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 시행령안
 - 20 … 첨부자료 2 - 의무사자상규명에관한특별법 시행령안

당국의 허락을 받은 저작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을 올바르게 세워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정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오늘 이 토론회를 위해 고생을 아끼지 않았던 제 단체 여러분들과, 변호사 교수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역사들의 민주화열망을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결코 도외시 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순리입니다. 민주화를 위한 민중들의 힘은 제주 4·3항쟁, 5·18광주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항쟁들은 시일이 흐른 뒤에야 그 정당성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하기에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을 지금 이 시점에서 되짚어 본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역사란 일순간에 정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래 들어도 보수 및 수구세력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민주화운동에 대한 갖은 음해와 역사를 되돌리려는 망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하기에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고 올바른 관점에서 정리를 한다는 것이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의 죽음을 먼 훗날이 아닌 이 시대에 그 의미를 제대로 세워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죽음을 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을 올바르게 세워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로 받아들이고 살아온 우리들이 꼭 이루려고 했던 법이 제정되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한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이 끝나줄 알았던 우리에게 던져지는 과제는 한 두 가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넘어야 할 장벽이 한 두개가 아니기에 좌절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가슴으로 서로의 눈을 응시하며, 사람들을 한 명 두 명 만나며 다시 처음처럼 한다라는 자세로 임한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행령 제정에서부터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올바로 세워내는 것까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이번 토론회가 기획되었습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힘을 모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을 올바르게 세워내고, 부족했던 민주화운동에 대한 학문적 성과를 모아내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국민연대 기획토론회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 꾸준히 개최되기를 바라며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활동 경과

- 1998년 4월 24일~10월 30일까지 유가협/추모단체연대회의 등이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함.
- 1998년 11월 4일부터 유가협,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앞 천막 농성 돌입'
- 1999년 12월 28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1999년 12월 30일 유가협 농성 해단식(422일간의 농성)
- 2000년 1월 12일 대통령, 법률 서명, 공포
- 2000년 3월 2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제단체 대표 및 집행책임자회의(유가협, 추모연대,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 9개 단체)를 한우리교회에서 갖고 '(가칭)민주열사명예회복 의문사진상규명 민간위원회' 건설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함.
- 2000년 3월 21일, 제 단체 집행책임자회의를 갖고 '(가칭)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결성에 합의하고, 4월 6일 발족하기로 함.
- 2000년 3월 30일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1차 대표자회의(유가협, 추모연대,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 16개 단체 참석)를 갖고 조직 구성안과 사업계획, 시행령안 등에 대해서 논의함. 회의 이후 시행령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함.
- 2000년 4월 6일 2차 대표자회의, 발족 기자회견을 가짐. 행자부 민주화보상지원단과의 1차 협의
- 2000년 4월 11일 3차 집행위원회 회의
- 2000년 4월 17일 4차 집행위원회 회의
- 2000년 4월 19일 사무처 구성 모임을 가짐, 행자부 민주화보상지원단과의 2차 협의

- 2000년 4월 21일 '명예회복 보상법 ·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올바른 시행령 제정 촉구를 위한 국민연대 결의대회'를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우천 속에 50여명이 모여 진행
- 2000년 4월 24일 공동대표, 고문단, 정부 위원 추천인사 간담회를 오후 2시 민변에서 진행하려 했으나 참석자가 많지 않은 관계로 연기
- 2000년 4월 27일 2차 공동 대표자 회의를 유가협에서 진행하여 정부 위원회 추천인사안을 논의
- 2000년 4월 29일 민주화보상지원단장 면담
- 2000년 5월 2일 오후 4시 5차 집행위원회 회의. 오후 7시 민변 사무실에서 분과위 구성을 위한 합동 회의를 민변, 민교협 소속 교수, 변호사와 각 단체 집행책임자, 개인인사들이 모여 진행하여 각 위원회의 체계와 구성에 대하여 논의
- 2000년 5월 4일 오전 8시 기독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사회 각계 원로들과 공동대표들이 모여 조찬모임 진행, 정부의 위원회 추천인사에 대한 논의와 그 동안의 활동 경과에 대한 보고들을 진행.
- 2000년 5월 8일 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천정배의원) 시행령 관련 면담
- 2000년 5월 10일 오전 11시 30분 올바른 시행령 제정 촉구를 위한 2차 국민연대 집회를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중앙청사 후문앞에서 진행
- 2000년 5월 17일 6차집행위원회 회의. 민주당 천정배 의원 면담
- 2000년 5월 19일 3차 공동대표자 회의를 진행해 6월 10일 진행될 '제11회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범국 민주모제'에 대한 논의 진행. 국민연대가 주관하고 범국민추모제 행사준비위를 국민연대에 포함되지 않은 단체까지 포함해서 구성하기로 논의.

민주화운동의 개념과 범주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정치학)

1. 문제의 제기: 무엇이 문제인가

- 분단과 전쟁을 통한 한국의 반공국가 형성과정과 그 뒤를 이어 전개되었던 압축적 산업화 과정은 한국의 정치를 권위주의화 했다. 이승만정권의 반공독재 및 박정희정권의 개발독재가 바로 그것이다. 이 같이 권위주의화 되었던 한국정치가 절차적 측면에서, 또한 실질적 측면에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심각히 제약하고 저해했음은 물론이다.

- 그러나 독재로 인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이 제약되고 저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어렵사리 한국의 민주주의를 확대시키고 강화해왔다. 세계적 맥락 속에서도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열차게 전개되었던 이같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없었다면, 이만큼이나마 진전된 한국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 이렇듯,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힘입은 바 크며, 특히 그 과정에서 헌신하고 희생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정부당국이 지난해 말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이하 <의문사법>)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명예회복·보상법>)을 제정,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노력에 대해 그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그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고자 한 것은, 뒤늦은 것이기는 하지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2000년 5월 23일~26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올바른 시행령 제정 촉구를 위한 농성'을 정부중앙청사후문 앞에서 진행.
- 2000년 5월 29일 7차 집행위원회 회의
- 2000년 6월 5일 오후 7시 민변사무실에서 민주화운동의 개념과 현재적 의미라는 주제하에 정태상변호사, 정해구 교수, 박래군 사무처장의 발제와 더불어 국민연대 활동과 민주화운동의 개념등에 관한 내부 워크샵을 진행
- 2000년 6월 7일 8차집행위원회
- 2000년 6월 10일 '제11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를 종묘공원에서 국민연대 주관으로 약 3000여명이 모여 진행.
- 2000년 6월 12일 9차집행위원회
- 2000년 6월 16일 공동집행위원장단과 추모연대 의문사진상규명팀 간담회, 진상규명팀의 위상과 그동안의 진행경과에 대한 보고와 논의
- 2000년 6월 18일 '강제징집희생자 합동추모제'를 고대 민주광장에서 국민연대 주최로 진행
- 2000년 6월 20일 10차 집행위원회
- 2000년 6월 23일 '의문사 진상규명 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실무회의' 진행
- 2000년 6월 26일 11차 집행위원회
- 2000년 6월 27일 시행령 제정 관련 민주당 배기선의원 면담
시행령 제정 관련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면담
- 2000년 6월 29일 시행령 제정 관련 법제처 차장 면담

- 그러나 이 법들의 시행과 관련, 현재 민주화운동을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것은 <명예회복·보상법> 제2조 1항에서 규정된 민주화운동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예회복·보상법> 제2조 1항에 규정된 민주화운동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주제 ② 헌법·인권·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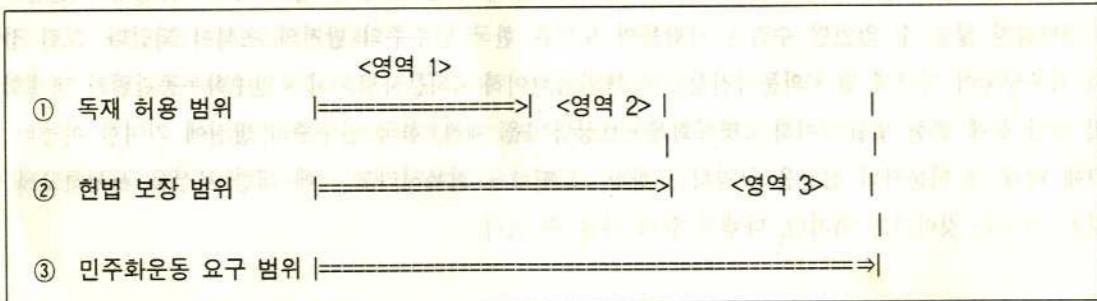
- 즉, 첫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범위를 확정할 것인가에 따라, 둘째 이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범위를 확정할 것인가에 따라, 민주화운동에 대한 개념 정의와 그 범위 확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 이 글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회복·보상법> 제2조 1항의 이 같은 규정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를 논하기 위한 것이다.

2. 헌법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해석

- 그 동안의 독재의 시행과 이에 저항했던 민주화운동의 전개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독재가 허용했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범위, 민주화운동이 요구했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범위,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범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표 1> 참조).

<표 1> 국민의 자유와 권리 범위



첫째, 독재가 허용했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범위는 헌법의 그것이나 민주화운동의 그것에 비해 대단히 협소하다(<영역 1>). 그것은 분단과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국가형성 과정에서 반공주의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상당 정도 제한되었을(예컨대, 국가보안법에 의한 제한) 뿐만 아니라, 독재정권이 자신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위해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했기 때문이다.

둘째, 반면 민주화운동이 요구했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넓다. 그것은 민주화운동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당연히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범위가 마땅히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셋째, 최고 효력을 갖는 법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범위는 독재가 허용하는 그것과 민주화운동이 요구하는 그것 사이의 어디엔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은 실제적으로 보장되어야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동안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의 반공주의적 제한으로 인해 또한 독재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해 제대로 보장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 헌법의 기본권 보장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 이상과 관련, 우선 우리는 헌법의 기본권 보장에 의해 마땅히 보장받았어야 하나(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참조) 독재로 인해 그렇지 못했던 민주화운동(<영역 2>)은 마땅히 <명예회복·보상법> 제2조 1항의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다음으로 우리는 헌법이 그 보장을 약속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그것은 크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하에 그 범위가 좁게 해석되는 경우와, ‘사회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하에 그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하는 두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한편으로는 반공주의라는 더 협의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의 바탕 위에서 대체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는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면서 기본권 보장에 있어 생존권적 기본권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실질적(경제적)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상과 같은 헌법의 기본권 보장 범위와 관련, 그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우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공주의와 같은 것으로 보는 가장 협의의 해석은 피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러한 해석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실체적으로 제한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확대코자 하는 시대적 경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헌법이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의 바탕 위에서 대체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협의의 해석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그 해석이 국민의 실질적 평등, 즉 경제적 평등 보장을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헌법의 기본권 보장 해석은 가장 넓은 의미의 해석,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뿐만 아니라 사회민주적 기본질서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럴 경우, 민중들의 생존권은 그 보장이 약속된 헌법의 기본권 안에 포함이 된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경제적)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활동 역시-설사 그것이 사회주의 용어를 사용했다 할지라도-헌법에 의해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던 민중 생존권 투쟁이나 실질적 평등을 위한 활동 역시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의해 침해받았을 경우 그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헌법 기본권 보장 범위의 <영역 3>으로의 확대).

- 한편 <영역 3>과 관련하여, 독재정권이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에 의한 공안사건들을 조작했던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역시 국가에 의해 그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요컨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련된 자유와 권리 뿐만 아니라 사회민주적 기본질서에 관련된 자유와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민중 생존권 투쟁이나 실질적 평등을 위한 활동 역시 헌법 보장의 기본권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3. <명예회복·보상법> 제2조 1항의 '민주화운동'의 해석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명예회복·보상법>은 '민주화운동'을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

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관련,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이에 대한 항거'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논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이끌어내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범위가 그 해석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이에 대한 항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권위주의적 행위>

- ① 직접 행위<----->항거-----피해
- ② 간접 행위<----->항거-----피해

<권위주의적 상황>

- ③ 직접 상황<----->항거-----피해
- ④ 간접 상황<----->항거-----피해

- 우선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행위'와 '상황'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이에 대한 항거에 따른 피해는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 '행위'에 의해 발생하거나,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 '상황'에 의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국가가 구체적인 행위에 나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권위주의적 상황 자체만으로도 이에 대한 항거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①의 경우는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국가의 권위주의적 직접 행위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항거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 ②의 경우는 국가의 권위주의적인 간접 행위, 즉 국가의 지시, 지원에 의해 또 다른 제3의 주체에 의한 권위주의적 행동이 가해짐으로써 이에 대한 항거와 피해가 유발되는 경우이다. ③의 경우는 국가의 직·간접적인 행위 없이도 권위주의적 통치 상황 자체에 항거하여 피해가 유발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④의 경우는 국가의 행위 없이도 권위주의적인 통치 상황의 영향을 받아 제3의 또 다른 주체의 권위주의적 행동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항거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 사실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한 피해는 국가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①의 경우), 사회민주화운동이나 민중 생존권투쟁의 많은 경우 국가의 간접적인 행위(②의 경우)나 권위주의적 상황의 영향을 받은, 또는 그 상황을 이용한 사용자 측의 탄압(④의 경우)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후자의 경우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 또한, 예컨대 전태일 분신사건의 경우, 그것은 박정권 개발독재의 권위주의적인 통치 상황 속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무시하는 사용자 측에 대해, 동시에 그 준수를 보장해주지 않는 국가의 부작위에 항거하여 발생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태일의 행위는 사회민주화, 국가 민주화의 일환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가의 권위주의적인 직접적인 행동에 의해 유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주화운동에서 제외한다면 그것은 <명예회복·보상법>의 일대 난센스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4. 맷음말

- 처음에 말했듯이, 한국 민주화운동은 역대 정권의 독재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발전의 결과를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인색한 편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피해와 희생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명예회복 및 보상조치조차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 <의문사법>과 <명예회복·보상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중 그 피해자와 희생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예우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이 조치들이 행정 편의와 시대착오적인 의식에 의해 출속으로 처리될 경우, 그것은 이 조치들이 가져야 하는 정당한 의미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따라서 헌법의 기본권 보장에 대해, 그리고 <의문사법>과 <명예회복·보상법>에 규정된 민주화 운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 해석이 도모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민주주의의 시대적 사화에 부합하는 법각각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성과

박세길 (전국연합 편집위원장)

■ 죄송합니다. 당일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대통령령 제 1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거"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뿐 아니라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민주화운동관련 질병)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제7조제1항의 장해등급판정 분과위원회가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성금의 모금방법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념사업유형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 ②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에 관한 심의·결정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조치결과를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② 간사는 행정자치부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련자 및 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2.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3. 법 제4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4.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기념사업 및 추모사업지원분과위원회
- ② 각 분과위원회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모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평균임금의 적용)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

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을 평균임금등으로 한다. 다만, 전국규모의 통계가 없는 때에는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평균임금은 먼저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에 의하고, 임금구조기본 통계가 없는 때에는 통계청의 건설노임단가통계에 의하며, 건설노임단가통계도 없는 때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

사한 남녀별 보통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의 통계에 의한 1972년도 남녀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10조(생활비공제)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 임금에서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배상법시행령의 준용) ①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은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의료지원금)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후치료비·개호비·보장구 구입비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향후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을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 등에서 향후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개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월 최고 99만원부터 최저 33만원까지의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평균 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제13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등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관련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의한다)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이민·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6.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수령에 있어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의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 재산상속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기타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기타의 경우에는 읍·면·동장

④ 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추원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명예회복신청)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마)의 명예회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관련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한다) 1부
3.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이를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재심사 요구 등) 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결정)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보상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연월일

제18조(통지) 위원회가 보상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명예회복)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9조(재심신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애진단서(장애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기타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 번호
2. 보상결정 접수번호 및 결정주문
3.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
4.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5. 청구연월일

제21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공고) 위원회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및 명예회복의 신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지급액의 산정기준
7. 심의·결정절차
8. 기타 신청·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단체 등이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명부
3. 당해 연도 정기총회회의록 (예산·결산서 포함)
4. 사업계획서

제25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제10조관련)

구 분	생활비 비율
부양가족이 없는 자	12수령 12월부조와 전부수령 35%
부양가족이 있는 자	부양의무자 12월부조와 전부수령 30% 부양가족 12월부조와 전부수령 30%

비 고 : 부양의무자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의한다.

대통령령 제 호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업무)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의문사와 관련된 민원의 안내 및 상담
2. 의문사와 관련된 민원의 접수·처리
3. 의문사 사건의 조사결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
4.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공표에 관한 사항
6.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③위원회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실, 통신기기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위원회는 소관사무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상임위원) 상임위원 2인중 1인은 조사1과와 조사2과의 업무를, 나머지 1인은 조사3과와 특별조사과의 업무를 각각 지휘·감독한다.

제5조(사무국장) ①사무국장은 이사관 또는 별정직 2급상당으로 보한다.
②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하부조직) 사무국에 행정과·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 및 특별조사과를 둔다.

제7조(행정과) ①행정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및 사무국업무의 종합·조정
 2. 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조직·정원의 관리,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진정 등 민원의 접수
 5.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조사1과) ①조사1과장은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검사·3급상당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경찰을 제외한 기관관련 의문사 사건의 진상조사
 2. 소관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1호와 관련된 업무

제9조(조사2과) ①조사2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총경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찰관련 의문사 사건의 진상조사
 2. 소관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1호와 관련된 업무

제10조(조사3과) ①조사3과장은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영관급 장교·3급상당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관련 의문사 사건의 진상조사
 2. 소관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1호와 관련된 업무

제11조(특별조사과) ①특별조사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4급상당 범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특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장이 특별히 명하는 의문사 사건의 진상조사

2. 소관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1호와 관련된 업무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13조(전문위원 등) 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

에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14조(친족관계 등의 범위) 법 제18조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하며, "의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라 함은 의문사한 자와 아는 자 등으로서 의문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을 경험하였거나 그 사실을 전하여 들은 자를 말한다.

제15조(진정의 방식 등) ①법 제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진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진정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절차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정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진정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 진정을 취하할 수 있다. 진정인이 구술로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의문사 관련자들의 진정의 편의를 위하여 신문·방송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의 절차나 방식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16조(진정의 이송) 진정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결정 등의 기한) 위원회는 진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거나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결정 등의 통지)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각,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진정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진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이를 재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진정인·참고인·피진정인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이나 출석요구와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소속기관, 시설, 단체에 대한 관계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진정인·참고인·피진정인의 진술청취는 실지조사 장소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서 이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실지조사를 함께 있어 미리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일시·장소·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정인·참고인·피진정인·관계전문가 및 관계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등을 실지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원회는 조사대상자나 관련증거 또는 자료가 국외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당국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법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20조(진술의 녹음 등) 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인·참고인·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증인 등의 보호) ①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위원·증인·참고인이 의문사 사건의 관련자,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보상금의 지급 등) ①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상금액·보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보고 등) ①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가 모두 끝났을 경우 1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개별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 및 공표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문사 사건의 진상
 2. 피해자의 피해상황
 3. 의문사 사건의 발생 원인
 4. 의문사 사건을 예방하지 못하거나 그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원인
 5. 의문사 사건에 대한 관계자 및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6. 유사사건의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한 권고
 7. 기타 위원회에서 보고서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사항

④ 국제인권관련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보고서의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교육훈련 등) 위원회는 의문사 조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의 기관과 교류·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직원 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의문사 조사와 관련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사무국의 총속기기) 사무국은 위원회의 활동준로후 3월까지 총속한다.

早
文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관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활동종료기한이 도래한 경우
에 별표의 정원(2급 1, 3급 또는 4급 3, 4급 2, 4급 또는 5급 1, 5급 1, 6급 1, 기능직 10)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
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으로 보며, 위원회의 활동종료후 1년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
르는 것으로 본다.

[雪 丑]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회 공무원정원표(제12조관련)

총 계	23
정무직계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장관급)	1
별정직계	3
상임위원(1급상당)	2
비 서(6급상당)	1
일반직계	9
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검사 또는 별정직(3급상당 또는 4급상당)	1
검찰수사서기관·총경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영관급 장교 또는 별정직(3급상당 또는 4급상당)	1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1
기능직계	10
기능10등급(운전원)	3
기능10등급(사무원)	7

※ 비고 : 조사1과장·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을 각각 검사·총경·영관급 장교로 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국방부 및 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받아 보직한다.

[별지 서식]

(앞쪽) (한국어판) 표본증명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사용

제 호	문자 10자	
소 속 :	문자 10자	
직위(직명) :	문자 10자	
성 명 :	문자 10자	
기 간 :	문자 10자	
사 진 (2.5cm × 3cm)		
위 사람은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의 규정 에 의하여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인)		
55mm × 80mm	(본인 사진을 올려주세요)	
보존용지(1종) 70g/m ²	(용지 1종을 올려주세요)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
2. 조사요원은 조사업무수행시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제시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